|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시행과 관련한 몇 가지 규정**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령 제13호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시행과 관련한 몇 가지 규정》이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제67차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尹蔚民  2011년 6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이하 사회보험법이라 함)을 시행하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장 기본양로보험 관련**  **제1조** 사회보험법 제15조에서 규정한 통합양로금은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본양로금 계산 발급방법에 따라 계산, 발급한다.  **제2조** 종업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 퇴직연령에 달했으나 누계 납부연한이 15년 미만인 경우 15년까지 연장하여 납부할 수 있다. 사회보험법을 시행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고 납부연한을 5년 연장하여도 여전히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15년까지 일괄 납부할 수 있다.  **제3조** 종업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한 후 누계 납부연한이 15년(제2조의 규정에 따른 연장 납부 포함) 미만인 경우에는 호적 소재지의 신형 농촌사회양로보험 또는 도시거주민 사회양로보험으로 전환하여 상응하는 양로보험대우를 적용할 수 있다.  종업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한 후 누계 납부연한이 15년 미만(제2조에서 규정한 연장 납부 포함)임과 아울러 신형 농촌사회양로보험 또는 도시거주민 사회양로보험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은 서면으로 신청하여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사회보험취급기구는 신청을 접수한 후 서면으로 그에게 신형 농촌사회보험 또는 도시거주민 사회양로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와 종업원 기본양로보험관계를 종료하는 결과를 고지하고 본인의 서면 확인을 받은 후 그의 종업원 기본양로보험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 개인계좌의 예금액은 그 본인에게 일괄 지급한다.  **제4조** 종업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다성 간 유동취업 개인이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하였으나 누계 납부연한이 15년 미만인 경우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재정부의 도시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관계 이전 잠정방법 이첩에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國辦發 [2009] 66호) 중 대우 적용지역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양로보험료 납부지역을 확정한 후 이 규정 제2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종업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다성 간 유동취업 개인이 기본양로보험금 월별 수령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그 기본양로금의 분할 계산, 일괄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재정부의 도시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관계 이전 잠정방법 이첩에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國辦發 [2009] 66호)에 따라 집행한다.  **제6조**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개인계좌의 조기 인출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기본양로금 법정 수령조건에 부합되기 전에 해외로 이주한 개인은 개인계좌를 보류하여 법정 수령조건에 도달한 후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양로보험대우를 적용할 수 있다. 그중,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본인이 출국할 때 또는 출국 후에 서면으로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사회보험취급기구는 신청을 접수한 후 서면으로 그에게 개인계좌를 보류할 수 있는 권리와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관계를 종료하는 결과를 고지하고 본인의 서면 확인을 받은 후 그 본인의 종업원 기본양로보험관계를 종료하고 개인계좌의 예금액을 일괄 지급한다.  종업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사망한 후 그 개인계좌의 잔액은 법에 따라 상속받을 수 있다.  **제2장 기본의료보험 관련**  **제7조** 사회보험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퇴직인원이 기본의료보험 대우를 적용하는 납부연한은 각 지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종업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기본의료보험 관계를 이전할 시에는 그 기본의료보험 납부연한을 누계로 계산한다.  **제8조** 기본의료보험 가입인원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용이 기본의료보험 약품목록, 진료항목, 진료서비스시설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기금에서 지불한다.  기본의료보험 가입인원이 급진을 보거나 긴급구조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긴급구조에 필요한 약품은 범위를 적당하게 넓힐 수 있다. 기본의료보험 가입인원에 대한 급진, 긴급구조 의료서비스의 구체적 관리방법은 통합지역에서 현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3장 산재보험 관련**  **제9조** 종업원(비전일제 종업인원 포함)이 2개 또는 그 이상의 사용단위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 사용단위는 별도로 종업원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종업원이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종업원이 산업재해를 당할 때의 근무단위에서 산재보험 책임을 부담한다.  **제10조** 사회보험법 제37조 제(2)호 중의 주취기준은 《차량운전인원 혈액, 호기 알코올함량 데이터 및 검사》(GB19522-2004)에 따라 집행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의료기관 등 유관단위에서 법에 따라 제시한 검사결론, 진단증명서 등 자료는 주취인정의 의거로 될 수 있다.  **제11조** 사회보험법 제38조 제(8)호 중의 산재사망보조금이란 《산재보험조례》제39조의 일괄지급 산재사망보조금을 가리키며, 그 기준은 산업재해 발생 시의 직전 연도 전국 도시거주민 인당 지배가능 소득의 20배이다.  직전 연도의 전국 도시거주민 인당 지배가능 소득은 국가통계국이 공표한 데이터에 준한다.  **제12조** 사회보험법 제39조 제(1)호의 산재 치료기간의 임금복지는 《산재보험조례》 제33조 종업원의 유급휴가 기간에 적용하는 임금복지와 간호 등의 대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장 실업보험 관련**  **제13조** 실업인원이 사회보험법 제45조에서 규정한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실업보험금의 수령을 신청하고 동시에 기타 실업보험대우를 적용할 수 있다. 그중 본인의 의사가 아닌 취업중단에는 아래의 상황이 포함된다.  (1) 노동계약법 제44조 제(1)호, 제(4)호,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종료한 경우  (2) 사용단위에서 노동계약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사용단위에서 노동계약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기하여 쌍방이 노동계약의 해지에 대해 합의를 달성한 경우  (4) 사용단위에서 노동계약의 해지를 제기하거나 또는 사용단위에 의해 사퇴, 제명, 해고를 당한 경우  (5) 노동자 본인이 노동계약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 경우  (6) 법률, 법규, 규장에서 규정한 기타의 상황.  **제14조** 실업인원이 실업보험금을 수령한 후 재취업을 했다가 다시 실업한 경우 그 납부시간은 다시 기산된다. 실업인원이 당기에 실업보험금 수령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기존의 납부기간이 보류되며, 재취업을 거쳐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누계로 계산한다.  **제15조** 실업인원은 실업보험금 수령 기간에 적극적으로 구직하고 직업중개 또는 직업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업인원의 직업중개, 직업교육 보조는 실업보험기금에서 규정에 따라 지불한다.  **제5장 기금관리 및 취급기구의 서비스 관련**  **제16조** 사회보험기금 예산, 결산 초안의 편성, 심사 및 승인은 《사회보험기금 예산 시범에 대한 국무원의 의견》(國發 [2010] 2호)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7조** 사회보험취급기구는 해마다 최소 1회 사회보험 가입인원의 개인권익기록통지서를 본인에게 우송해야 한다. 사회보험취급기구는 휴대폰 메시지 또는 전자메일 등의 방식으로 사회보험 가입인원에게 개인권익기록을 발송해야 한다.  **제18조** 사회보험행정부서, 사회보험취급기구 및 그 업무직원은 법에 따라 사용단위 및 개인 정보와 관련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법을 어기고 타인에게 아래의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1) 사용단위의 상업비밀과 관계되거나 공개 후 사용단위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줄 수 있는 정보  (2) 개인의 권익과 관계되는 정보.  **제6장 법률적 책임**  **제19조** 사용단위가 노동계약을 종료하거나 해지할 때 종업원에게 노동관계 종료 또는 해지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아 종업원이 사회보험대우를 적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단위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20조** 사용단위는 종업원이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원천징수한다. 사용단위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회보험료 징수기구는 사용단위에 기한부 대리 납부하도록 명령하며, 동시에 체납한 날로부터 사용단위에 일당 0.5‰의 체납금을 부과시킨다. 사용단위는 종업원에게 체납금을 부담시키지 못한다.  **제21조** 사용단위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생산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는 성급 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서의 승인을 얻고 사회보험료를 일정 기간 유예 납부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유예 납부기간에는 체납금이 면제된다. 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단위는 상응하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22조** 사용단위에서 사회보험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사회보험료 징수기구와 유예납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유예납부기간의 체납금을 면제한다.  **제23조** 사용단위에서 이 규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유예 납부하는 기간에는 그 종업원의 사회보험대우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4조** 사용단위가 월별로 납부한 사회보험료 명세상황을 종업원 본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보장 감찰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5조** 의료기구, 약품경영단위 등 사회보험서비스기구가 사기, 증명자료 위조 또는 기타의 수단으로 사회보험기금의 지출을 편취한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편취한 사회보험금을 반납하도록 명령하고 편취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킨다. 사회보험취급기구는 그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구, 약품경영단위에 대해 계약의 약정에 따라 책임추궁을 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그와 체결한 서비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직업자격이 있는 직접 책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인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그 직업자격을 부여한 유관 주관기관에 법에 따라 그 직업자격을 말소하도록 건의한다.  **제26조** 사회보험취급기구, 사회보험료 징수기구, 사회보험기금 투자운영기구, 사회보험기금 특별계좌를 개설한 기구 및 전문 관리은행과 그 업무직원이 아래의 불법상황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사회보험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1) 징수해야 하거나 이미 징수한 사호보험기금을 은닉, 불법방치 등의 수단으로 규정에 따라 징수 또는 장부에 기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규정을 어기고 사회보험기금을 사회보험기금 특별계좌 그 밖의 계좌에 돌린 경우  (3) 사회보험기금을 착복한 경우  (4) 각종 사회보험기금을 혼동 사용하거나 또는 사회보험기금을 기타 사회보장기금에 사용한 경우  (5) 사회보험기금을 재정예산의 균형, 사무장소의 건설이나 개축, 인력 경비, 운임, 관리비용 지급에 사용한 경우  (6) 국가에서 규정한 투자운영정책을 어긴 경우.  **제7장 기 타**  **제27조** 종업원과 사용단위 지간에 사회보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조정중재법》, 《노동인사쟁의 중재규칙》의 규정에 따라 조정,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종업원이 사용단위에서 그 사회보험료를 제때에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등으로 인해 본인의 사회보험권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사회보험행정부서 또는 사회보험료 징수기구에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사회보험행정부서 또는 사회보험료 징수기구는 사회보험법과 《노동보장 감찰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처리 과정에서 사용단위에서 쌍방의 노동관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관련 사실을 규명한 후 계속 처리해야 한다.  **제28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사회보험취급기구의 사회보험료 징수지역에서 사회보험법 제63조에서 규정한 행정부서의 필요한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  **제29조** 2011년 7월 1일 이후 사용단위에서 사회보험료를 제때에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보험법과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2011년 7월 1일 전에 발생한, 사용단위에서 사회보험료를 제때에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인민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0조**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实施《中华人民共和国**  **社会保险法》若干规定**  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令第13号  《实施〈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若干规定》已经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第67次部务会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1年7月1日起施行。  部 长 尹蔚民  二Ｏ一一年六月二十九日  为了实施《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以下简称社会保险法），制定本规定。  **第一章 关于基本养老保险**  **第一条** 社会保险法第十五条规定的统筹养老金，按照国务院规定的基础养老金计发办法计发。  **第二条** 参加职工基本养老保险的个人达到法定退休年龄时，累计缴费不足十五年的，可以延长缴费至满十五年。社会保险法实施前参保、延长缴费五年后仍不足十五年的，可以一次性缴费至满十五年。  **第三条** 参加职工基本养老保险的个人达到法定退休年龄后，累计缴费不足十五年（含依照第二条规定延长缴费）的，可以申请转入户籍所在地新型农村社会养老保险或者城镇居民社会养老保险，享受相应的养老保险待遇。  参加职工基本养老保险的个人达到法定退休年龄后，累计缴费不足十五年（含依照第二条规定延长缴费），且未转入新型农村社会养老保险或者城镇居民社会养老保险的，个人可以书面申请终止职工基本养老保险关系。社会保险经办机构收到申请后，应当书面告知其转入新型农村社会养老保险或者城镇居民社会养老保险的权利以及终止职工基本养老保险关系的后果，经本人书面确认后，终止其职工基本养老保险关系，并将个人账户储存额一次性支付给本人。  **第四条** 参加职工基本养老保险的个人跨省流动就业，达到法定退休年龄时累计缴费不足十五年的，按照《国务院办公厅关于转发人力资源社会保障部财政部城镇企业职工基本养老保险关系转移接续暂行办法的通知》(国办发〔2009〕66号)有关待遇领取地的规定确定继续缴费地后，按照本规定第二条办理。  **第五条** 参加职工基本养老保险的个人跨省流动就业，符合按月领取基本养老金条件时，基本养老金分段计算、统一支付的具体办法，按照《国务院办公厅关于转发人力资源社会保障部财政部城镇企业职工基本养老保险关系转移接续暂行办法的通知》(国办发〔2009〕66号)执行。  **第六条** 职工基本养老保险个人账户不得提前支取。个人在达到法定的领取基本养老金条件前离境定居的，其个人账户予以保留,达到法定领取条件时，按照国家规定享受相应的养老保险待遇。其中，丧失中华人民共和国国籍的，可以在其离境时或者离境后书面申请终止职工基本养老保险关系。社会保险经办机构收到申请后，应当书面告知其保留个人账户的权利以及终止职工基本养老保险关系的后果，经本人书面确认后，终止其职工基本养老保险关系，并将个人账户储存额一次性支付给本人。  参加职工基本养老保险的个人死亡后，其个人账户中的余额可以全部依法继承。  **第二章 关于基本医疗保险**  **第七条** 社会保险法第二十七条规定的退休人员享受基本医疗保险待遇的缴费年限按照各地规定执行。  参加职工基本医疗保险的个人，基本医疗保险关系转移接续时，基本医疗保险缴费年限累计计算。  **第八条** 参保人员在协议医疗机构发生的医疗费用，符合基本医疗保险药品目录、诊疗项目、医疗服务设施标准的，按照国家规定从基本医疗保险基金中支付。  参保人员确需急诊、抢救的，可以在非协议医疗机构就医；因抢救必须使用的药品可以适当放宽范围。参保人员急诊、抢救的医疗服务具体管理办法由统筹地区根据当地实际情况制定。  **第三章 关于工伤保险**  **第九条** 职工（包括非全日制从业人员）在两个或者两个以上用人单位同时就业的，各用人单位应当分别为职工缴纳工伤保险费。职工发生工伤，由职工受到伤害时工作的单位依法承担工伤保险责任。  **第十条** 社会保险法第三十七条第二项中的醉酒标准，按照《车辆驾驶人员血液、呼气酒精含量阈值与检验》（GB19522-2004）执行。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医疗机构等有关单位依法出具的检测结论、诊断证明等材料，可以作为认定醉酒的依据。  **第十一条** 社会保险法第三十八条第八项中的因工死亡补助金是指《工伤保险条例》第三十九条的一次性工亡补助金，标准为工伤发生时上一年度全国城镇居民人均可支配收入的20倍。  上一年度全国城镇居民人均可支配收入以国家统计局公布的数据为准。  **第十二条** 社会保险法第三十九条第一项治疗工伤期间的工资福利，按照《工伤保险条例》第三十三条有关职工在停工留薪期内应当享受的工资福利和护理等待遇的规定执行。  **第四章 关于失业保险**  **第十三条** 失业人员符合社会保险法第四十五条规定条件的，可以申请领取失业保险金并享受其他失业保险待遇。其中，非因本人意愿中断就业包括下列情形：  （一）依照劳动合同法第四十四条第一项、第四项、第五项规定终止劳动合同的；  （二）由用人单位依照劳动合同法第三十九条、第四十条、第四十一条规定解除劳动合同的；  （三）用人单位依照劳动合同法第三十六条规定向劳动者提出解除劳动合同并与劳动者协商一致解除劳动合同的；  （四）由用人单位提出解除聘用合同或者被用人单位辞退、除名、开除的；  （五）劳动者本人依照劳动合同法第三十八条规定解除劳动合同的；  （六）法律、法规、规章规定的其他情形。  **第十四条** 失业人员领取失业保险金后重新就业的，再次失业时，缴费时间重新计算。失业人员因当期不符合失业保险金领取条件的，原有缴费时间予以保留，重新就业并参保的，缴费时间累计计算。  **第十五条** 失业人员在领取失业保险金期间，应当积极求职，接受职业介绍和职业培训。失业人员接受职业介绍、职业培训的补贴由失业保险基金按照规定支付。  **第五章 关于基金管理和经办服务**  **第十六条** 社会保险基金预算、决算草案的编制、审核和批准，依照《国务院关于试行社会保险基金预算的意见》(国发〔2010〕2号)的规定执行。  **第十七条**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每年至少一次将参保人员个人权益记录单通过邮寄方式寄送本人。同时，社会保险经办机构可以通过手机短信或者电子邮件等方式向参保人员发送个人权益记录。  **第十八条** 社会保险行政部门、社会保险经办机构及其工作人员应当依法为用人单位和个人的信息保密，不得违法向他人泄露下列信息：  （一）涉及用人单位商业秘密或者公开后可能损害用人单位合法利益的信息；  （二）涉及个人权益的信息。  **第六章 关于法律责任**  **第十九条** 用人单位在终止或者解除劳动合同时拒不向职工出具终止或者解除劳动关系证明，导致职工无法享受社会保险待遇的，用人单位应当依法承担赔偿责任。  **第二十条** 职工应当缴纳的社会保险费由用人单位代扣代缴。用人单位未依法代扣代缴的，由社会保险费征收机构责令用人单位限期代缴，并自欠缴之日起向用人单位按日加收万分之五的滞纳金。用人单位不得要求职工承担滞纳金。  **第二十一条** 用人单位因不可抗力造成生产经营出现严重困难的，经省级人民政府社会保险行政部门批准后，可以暂缓缴纳一定期限的社会保险费，期限一般不超过一年。暂缓缴费期间，免收滞纳金。到期后，用人单位应当缴纳相应的社会保险费。  **第二十二条** 用人单位按照社会保险法第六十三条的规定，提供担保并与社会保险费征收机构签订缓缴协议的，免收缓缴期间的滞纳金。  **第二十三条** 用人单位按照本规定第二十一条、第二十二条缓缴社会保险费期间，不影响其职工依法享受社会保险待遇。  **第二十四条** 用人单位未按月将缴纳社会保险费的明细情况告知职工本人的，由社会保险行政部门责令改正；逾期不改的，按照《劳动保障监察条例》第三十条的规定处理。  **第二十五条** 医疗机构、药品经营单位等社会保险服务机构以欺诈、伪造证明材料或者其他手段骗取社会保险基金支出的，由社会保险行政部门责令退回骗取的社会保险金，处骗取金额二倍以上五倍以下的罚款。对与社会保险经办机构签订服务协议的医疗机构、药品经营单位，由社会保险经办机构按照协议追究责任，情节严重的，可以解除与其签订的服务协议。对有执业资格的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由社会保险行政部门建议授予其执业资格的有关主管部门依法吊销其执业资格。  **第二十六条** 社会保险经办机构、社会保险费征收机构、社会保险基金投资运营机构、开设社会保险基金专户的机构和专户管理银行及其工作人员有下列违法情形的，由社会保险行政部门按照社会保险法第九十一条的规定查处：  （一）将应征和已征的社会保险基金，采取隐藏、非法放置等手段，未按规定征缴、入账的；  （二）违规将社会保险基金转入社会保险基金专户以外的账户的；  （三）侵吞社会保险基金的；  （四）将各项社会保险基金互相挤占或者其他社会保障基金挤占社会保险基金的；  （五）将社会保险基金用于平衡财政预算，兴建、改建办公场所和支付人员经费、运行费用、管理费用的；  （六）违反国家规定的投资运营政策的。  **第七章 其 他**  **第二十七条** 职工与所在用人单位发生社会保险争议的，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国劳动争议调解仲裁法》、《劳动人事争议仲裁办案规则》的规定，申请调解、仲裁，提起诉讼。  职工认为用人单位有未按时足额为其缴纳社会保险费等侵害其社会保险权益行为的，也可以要求社会保险行政部门或者社会保险费征收机构依法处理。社会保险行政部门或者社会保险费征收机构应当按照社会保险法和《劳动保障监察条例》等相关规定处理。在处理过程中，用人单位对双方的劳动关系提出异议的，社会保险行政部门应当依法查明相关事实后继续处理。  **第二十八条** 在社会保险经办机构征收社会保险费的地区，社会保险行政部门应当依法履行社会保险法第六十三条所规定的有关行政部门的职责。  **第二十九条** 2011年7月1日后对用人单位未按时足额缴纳社会保险费的处理，按照社会保险法和本规定执行；对2011年7月1日前发生的用人单位未按时足额缴纳社会保险费的行为，按照国家和地方人民政府的有关规定执行。  **第三十条** 本规定自2011年7月1日起施行。 |